

# 투자자문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한울파트너스투자자문 주식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8 조에 따라 재정한 회사의 투자자문계약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파트너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 1 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 한울파트너스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3.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 3 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수료)**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과되는 수수료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계약

가.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나. 투자자문 성과수수료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첨 1의 수수료 부과기준표와 같다. 다만, 투자자문자산의 특성, 규모, 성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이 결정하여 별도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수수료의 통보)** 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투자자문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아래에 의한다. 다만, 개별투자자와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별투자자별 부과절차에 의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체결일에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성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이 계약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계약자산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제1호의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7일이내에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전액을 즉시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 8 조 (경과규정) 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의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한다.

[ 부칙 ]

본 기준 및 절차는 2025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 1 호]

## 수수료 부과기준표

|             |            |            |            |
|-------------|------------|------------|------------|
| 목표수익률(허들0%) | Case1      | Case2      | Case3      |
| 기본수수료       | 1%         | 2%         | 3%         |
| 성과수수료       | 초과 수익의 30% | 초과 수익의 20% | 초과 수익의 10% |

|             |            |            |            |
|-------------|------------|------------|------------|
| 목표수익률(허들5%) | Case1      | Case2      | Case3      |
| 기본수수료       | 1%         | 2%         | 3%         |
| 성과수수료       | 초과 수익의 40% | 초과 수익의 25% | 초과 수익의 13% |

|              |            |            |            |
|--------------|------------|------------|------------|
| 목표수익률(허들10%) | Case1      | Case2      | Case3      |
| 기본수수료        | 1%         | 2%         | 3%         |
| 성과수수료        | 초과 수익의 60% | 초과 수익의 30% | 초과 수익의 15% |

한울파트너스투자자문 주식회사